

---

## 第 2 章

# 議會制度와 地方議會

第 1 節 議 會 制 度

第 2 節 地方議會의 組織

第 3 節 地方議會의 權限

第 4 節 地方議會의 會議

## 第 2 章 議會制度와 地方議會

### 第 1 節 議會制度

#### 1. 議會制度의 起源

近代的인 議會制度의 起源은 英國이라 할 수 있다. 英國의 議會制度는 13-17世紀에 發達한 등족회의(等族會議)에서 由來되었다. 等族會議는 貴族, 승려, 시민등 身分이 각기 다른 계층에서 그 代表者를 選出하여 構成된 合議體機關으로써 獨立된 位置에서 王權에 대한 여러가지 制限을 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制度가 18世紀 以後부터 發展하기 시작하여 19世紀에 이르러 간접 民主主義의 代表的인 形태로 정착된것이 議會制度이다.

#### 2. 우리나라의 議會制度 起源의 接近

우리나라의 議會制度 起源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部分的이거나 형식적으로나마 고려시대의 사심관제와 향직단체, 李朝時代의 유향소, 향청제, 향약제, 방, 사, 리, 동제, 5가통제, 두레, 품앗이, 향회제도, 舊韓末以後의 協議會,組合, 評議會, 地方會制度等을 들 수 있다.

#### 3. 우리나라의 地方議會制度

國家의 議會를 “國會”라 부르고, 地方自治團體의 議會를 “地方議會”라고 하는데 이 양자는 각기 그 機能이 基本的으로 다르다.

地方議會는 直接的으로 住民가까이에서 住民의 日常生活과 關聯되는 住民의 福祉

增進과 地域經濟에 관한 事項을 住民의 意思를 대변하여 解決하는데 그 存在價值가 있다. 우리나라의 地方議會制度는 制憲憲法에서 近代的인 地方自治制度를 導入하여 1949年 7月 4日字로 地方自治法이 制定되므로써 道, 서울특별시, 市, 邑, 面에 地方議會를 構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그 實施時期가 지연되어오다 1952年 4月 25日에 첫 地方議會議員 選舉를 實施하게 되었다.

이후 地方議會는 1961年까지 9年間 3代에 걸쳐 서울市議會, 道議會, 市, 邑, 面議會가 構成 運營되었고 郡議會는 構成되지 않았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地方議員 選舉 實施 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歷代地方議員選舉實施狀況

區 分	議 會 運 营 期 間	地方議會議員選舉			自治團體長 選舉		
		서울시 議 會	道 議 會	市.邑.面 議 會	서 울 市 長	道知事	市·邑 面 長
第1代 地方議會	1952~1956		第 1 回 52.5.10	第 1 回 52.4.25			地方議會 에서間選
第2代 地方議會	1956~1960	第 1 回 56.8.13	第 2 回 56.8.13	第 2 回 56.8.8			第 1 回 56.8.8
第3代 地方議會	1960~1961	第 2 回 60.12.12	第 3 回 60.12.12	第 3 回 60.12.19	第 1 回 60.12.29	第 1 回 60.12.29	第 2 回 60.12.26

地方自治法 改正에 따른 自治制度 變革

區 分	地方自治法改正	主 要 骨 子
第1 共和國	制定 : 1949. 7. 4 (法律 第32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울특별시, 道 ② 市, 邑, 面에 地方議會 構成托록 規定</li> <li>• 道知事, 서울특별시장의 大統領 任命制</li> <li>• 市邑面長 議會에서 選出 및 不信任決議權</li> <li>• 市邑面長의 議會解散權</li> <li>• 地方自治團體下部組織으로 郡, 里, 洞</li> <li>• 地方議會議員 住民直選 名譽職, 任期 4年</li> </ul>
	1次 改正 : 1949. 12. 15 (法律 第73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議會 未構成으로 인한 議會議決事項 代行規定</li> <li>• 團體長 任命權 規定(市長은 大統領, 邑面長은 道知 事가 任命)</li> <li>• 道의 副知事制度 廢止</li> </ul>
	2次 改正 : 1956. 2. 13 (法律 第385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市邑面長의 住民直選制</li> <li>• 議會의 地方自治團體長 不信任權과 自治團體長의 議會 解散權 廢止</li> <li>• 議會議員 및 市邑面長 任期 4年에서 3年으로 단축</li> <li>• 議員定數감축, 會議日數 制限</li> <li>• 議會議決權 擴大</li> <li>• 副市, 邑面長 道知事 承認下에 任命</li> <li>• 自治團體長의 議會 議決에 대한 拒否權 規定</li> <li>• 假豫算制度 採擇</li> </ul>
	3次 改正 : 1956. 7. 8 (法律 第388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議會 議員 定數 人口比例에 의한 算出</li> <li>• 道, 서울특별시 議會選舉區 基準을 市, 郡, 區의 分 割로 基準 變更</li> <li>• 서울특별시 以外의 市의 區廳長 任命權을 市長에게 附與</li> </ul>

區 分	地方自治法改正	主 要 骨 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市, 邑面長의 任期 종전대로 4年으로 환원</li> </ul>
	4次 改正 : 1958. 12. 26 (法律 第501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市, 邑面長에 대한 不信任 決議權 附與</li> <li>閉會中 委員會 開催制度 廢止</li> <li>會議決定日數 超過 開催時 監督官廳의 閉會命令</li> <li>地方議員任期 3年에서 4年으로 延長</li> <li>市邑面長, 洞里長을 直選制에서 任命制 採擇</li> <li>議會議長團에 대한 不信任制 廢止</li> <li>洞里의 下部行政區域으로 坊을 設置</li> </ul>
第2共和國	5次 改正 : 1960. 11. 1 (法律 第563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道 및 서울특별시 議員定數를 民議員選舉區 基準으로 變更</li> <li>選舉權 年齡을 21歲에서 20歲로 낮춤</li> <li>自治團體長 被選舉權 25歲</li> <li>不在者 選舉制度 採擇</li> <li>市, 道, 邑, 面長, 洞里長 모두 住民直選制로 하고 任期 4年</li> <li>地方議會 臨時會 會期 制限                       서울특별시 80일, 인구 50만 이상市 70일, 기타市 60일, 邑面 30일로 제한         </li> <li>地方議會 議長 및 副議長에 대한 不信任制 採擇</li> <li>假 예산제도 廢止하고 경상적 支出은 自治團體長 責任下에 支出</li> <li>下部行政區域 坊制度 廢止</li> </ul>
第3共和國	※ 1961. 5. 16 議會解散	

區 分	地方自治法改正	主 要 骨 子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地方自治에          관한臨時          措置法制定          1961. 9. 1          法律 第707號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自治團體 種類를 종전의 邑面대신 郡을 設置</li> <li>• 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市邑面長 및 洞里長의 任命制</li> <li>• 地方議會 議決權에 대한 監督廳의 代行</li> </ul>
第4共和國	<p>6次 改正 :</p> <p>1973. 1. 15</p> <p>(法律 第2437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警察署, 消防署의 設置根據 廢止</li> </ul>
第5共和國	<p>7次 改正 :</p> <p>1988. 4. 6</p> <p>(法律 第4004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自治法 全文改正(現行法의 基本)</li> </ul>
第6共和國	<p>8次 改正 :</p> <p>1989. 12. 30</p> <p>(法律 第4162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自治團體長의 住民直選과 副團體長의 任命制</li> <li>• 대도시에 區議會 設置</li> <li>•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時期 法律에 留保</li> </ul>
	<p>9次 改正 :</p> <p>1990. 12. 31</p> <p>(法律 第4310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議會議員의 兼職範圍 擴大</li> <li>•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長의 選舉時期 改正</li> </ul>
	<p>10次 改正 :</p> <p>1991. 5. 23</p> <p>(法律 第4367號)</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地方議會議員의 兼職 禁止 範圍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 農地改良組合, 山林組合, 葉煙草生產協同組合의 組合長 兼職禁止事項 削除</li> </ul> </li> </ul>
	<p>11次 改正 :</p> <p>1991.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地方議員에 대한 旅費支給 範圍 擴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會期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할때도 支給</li> </ul> </li> </ol>



## 4. 現行地方自治法

現行地方自治法은 1991.4.15 議會 출범 이후 1991.5.23(10次 改正), 1992.12.31(11次 改正), 두차례에 걸쳐 制度上의 미비점을 改正 補完하여 施行하게 되었다.

現行自治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現行地方自治法要約

區 分	廣域議會	基礎議會	備 考
任 期	4년		
任期의 시작	당선일 ※ 전임 의원의 임기만료의 다음날		
名譽職	○일비와 여비만 지급 • 일비 : 회기중 • 여비 : 지방의회 의결,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		
兼職의 禁止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관위 위원,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 ○언론인, 교원		
主要決定事項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 징수 (법령에 규정된 것 제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청원의 수리·처리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區 分	廣 城 議 會	基 礎 議 會	備 考
會 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 : 매년 11월20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날)</li> <li>○ 임시회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원 1/3이상 요구 ※ 최초임시회 : 선거일로부터 25일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li> </ul>	매년 11월25일	
會 期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 : 35일이내</li> <li>○ 임시회 : 10일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회 : 30일이내</li> <li>○ 임시회 : 10일이내</li> </ul>	
年 間 會 議 總 日 數	100일이내	60일이내	
議長, 副議長 (議會選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2년</li> <li>○ 의장 1, 부의장 2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 2년</li> <li>○ 의장 1, 부의장 1명</li> </ul>	
委 員 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원회 : 조례로 설치</li> <li>○ 특별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위원회</li> <li>○ 상임위원회(15인이상의원의회)</li> </ul>	
定 足 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정족수: 재적 1/3이상 출석</li> <li>○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li> </ul>		
議案의 發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li> <li>○ 재직의원 1/5이상</li> </ul> <p>※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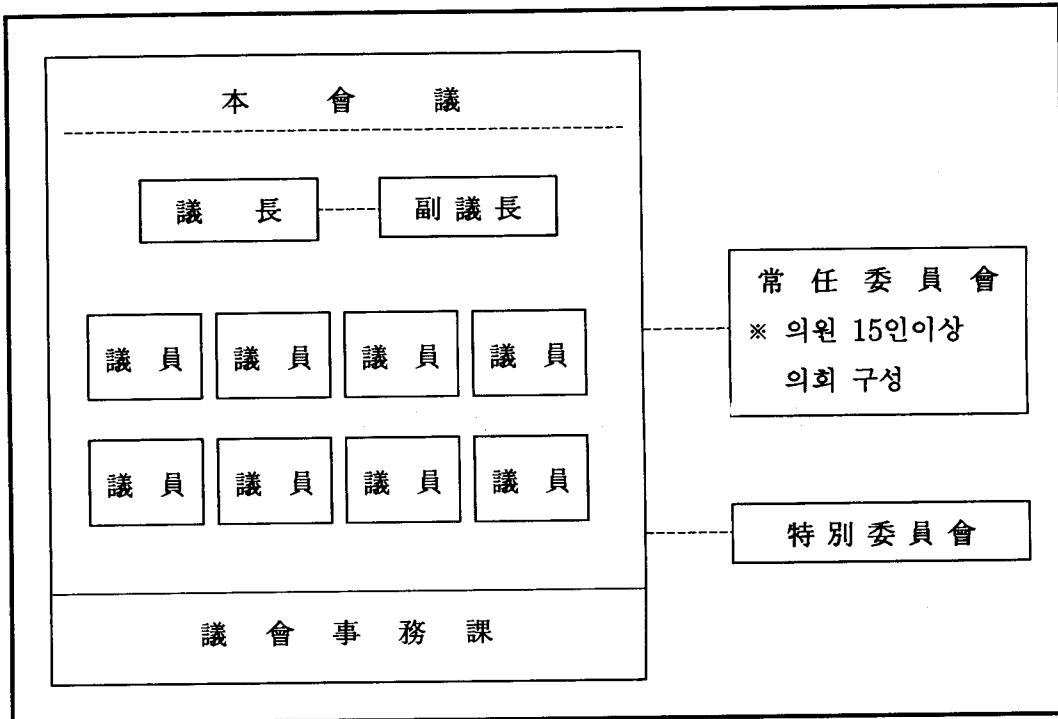
## 第 2 節 地方議會의 組織

### 1. 議會의 組織

基礎議會인 郡議會의 경우 議長과 副議長 各 1人을 두도록 되어있으며 議員中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出하며 任期는 2年이다. 그리고 議員全員이 參席하여 案件을

最終的으로 審査하는 本會議, 分野別로 特定案件을 審査하는 委員會로 構成 組織되어 있다.

### 議會의 組織



#### (1) 議 長

##### ① 定期會 및 臨時會의 召集公告權

議長은 定期會 및 在籍議員 1/3 以上의 要求,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求가 있을시는 15日 以內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 ② 院內秩序 維持權

議長은 自律的으로 院內의 秩序와 安寧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會議場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및 금지, 퇴장명

령, 會議中斷, 散會宣布등을 할 수 있다.

③ 委員會에 出席, 發言權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④ 條例 移送權

地方議會에서 議決된 條例案등의 案件이 議決된 때에는 5日以內에 自治團體長에게 移送하여야 한다.

⑤ 確定된 條例의 例外的 公布權

確定 移送된 條例를 地方自治團體長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議會 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⑥ 閉會中의 議員 辭表處理權

閉會中에 議員辭表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⑦ 議會事務機構의 監督

議會事務機構 職員을 監督한다.

⑧ 議會代表權

議會를 代表하고 議事を 進行한다.

(2) 副議長

副議長은 議長의 職務를 代理하며 議長의 事故가 있거나 불신임 결의 또는 제척의 대상이 된때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 2. 議會의 會議

(1) 本會議

地方議會의 意思를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本會議는 在籍議員 全員으로 構成되고, 地方議會의 本會議는 在籍 3분의 1 이상의 出席으로 開議하며,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案件을 審

查 議決한다.

## (2) 委員會

地方議會의 組織員인 議員 全員으로 構成하여 運營하는 會議를 本會議라 하고,

議員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構成하여 運營하는 組織을 委員會라 한다.

委員會는 案件을 能率的으로 또는 專門的, 技術的으로 深度있게 審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制度로 本會議에 準備的 内지 豫備的으로 審議하는 内部組織이다.

상설되어 있는 常任委員會와 특히 菲요하다고 인정되는 特定案件을 일시적으로 審查하기 위하여 設置하는 特別委員會 2種이 있다.

基礎議會에서는 15人以上 議會에서만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幹事 1人을 둔다.

# 第 3 節 地方議會의 權限

## 1. 議會의 權限

地方議會의 本質的 機能은 地方自治團體의 最高意思決定機關이라 하겠으나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議決機關일 따름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形式的인 觀點에서 보면 ① 의결권, ② 승인권, ③ 통제권등이 있고, 實質的인 觀點에서 보면 ① 입법(조례제정)에 관한 권한, ② 재정에 관한 권한 ③ 대집행기관통제에 관한 권한, ④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⑤ 지방의회 내부에 관한 권한 등이 있다.

### (1) 立法에 관한 권한(條例制定權)

地方議會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制定權을 갖는다. 조례제

정권은 地方議會의 권한중 가장 基本的인 것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事項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法 第15條)

### (2) 財政에 관한 權限

地方議會는 재정과 관련하여 ①豫算審議, 確定, ②決算의 承認, ③法令에規定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⑥법령과 조례에規定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등에 관하여 議決權을 갖는다.

### (3) 對執行機關統制權

地方議會가 갖는 각종의 권한 모두가 정도에 차이가 있겠으나, 대집행기관의 통제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執行事務의 監查와 調查, 行政事務處理狀況의 報告聽取와 質問, 決算의 承認등을 들 수 있다.

#### ① 行政事務監查와 調查

地方議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전반적으로 監查하거나, 그 사무 중特定事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議決로 調查할 수 있다. (地自法 第36條 1項 전자를 行政事務監查, 후자를 行政事務調查라 부른다.)

##### ○ 調查의 發議

행정조사를 하자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地自法 第36條 2項)

##### ○ 監查와 調查의 方式

地方議會는 감사 또는 調查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書類의 提出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보조기관의 出席, 發言이나 意見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地自法 第36條 1項)

#### ② 行政事務處理의 報告聽取와 質問

○ 執行機關의 處理狀況報告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行政事務의 處理狀況을 報告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地自法 第37條 1項)

○ 執行機關의 出席, 答辯要求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 公務員에게 出席, 答辯을 要求할 수 있고, 要求받은 자는 반드시 出席·答辯하여야 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 公務員으로 答辯하게 할 수 있다. (地自法 第37條 2項)

③ 決算의 承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查委員의 檢查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地自法 第125條 1項)

(4) 一般事務에 관한 議決權限

지방의회는 ①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②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③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地自法 第35條 1項)

그리고 地方議會는 決算과 관련하여 檢查委員을 選任하고 (地自法 第125條 1項), 그밖에 教育委員會의 委員을 選任한다. (地教育 第5條 1項)

## 2. 議會內部에 관한 權限

지방의회는 자신의 조직,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해서 자주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 自律權을 가진다.

(1) 議會運營의 自律權

지방의회의 운영은 헌법, 법률, 조례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법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地自法 第63條). 地方議會의 開會, 休會, 閉會와 會期 역시 地方議會가 정한다. (地自法 第41條 1項)

(2) 內部警察權과 地方議會家宅權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地自法 第77條 1項)

地方議會는 회의장내에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地方議會議員, 방청인에 대하여 명령, 강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것을 내부경찰권이라 한다. 내부경찰권은 地方議會의 長이나 委員長이 관장한다. (地自法 第74條 1項, 第77條 2項)

地方議會는 議會의 의사에 반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는 퇴장을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이를 地方議會家宅權이라 한다.

地方議會家宅權 역시 地方議會의 長이나 委員長이 관장한다. (地自法 第74條 2項, 3項).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 (地自法 第77條 4項)

(3) 內部組織權

地方議會는 스스로 內部組織을 行하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議長團의 構成

지방의회는 議長과 副議長을 선출하며(地自法 第42條 1項), 臨時議長도 선출한다. (地自法 第46條)

### 投票, 無效, 棄權 判定基準 例示

#### 〈無效處理 投票〉

- 議長團 選舉時 議員 아닌자를 記載한 用紙
- 姓名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表示를 한 用紙
- 投票欄以外에 姓名을 表示한 用紙

#### 〈棄權處理 投票〉

- 아무런 表示를 하지 아니한 用紙
- ※ 有效, 無效, 棄權票의 最終判斷은 監票委員들이 決定함.

### 開票時 名牌와 投票數의 相異時 對處方法

#### ① 名牌數 > 投票數일 경우

- 投票數보다 많은 名牌數를 棄權으로 處理함.

#### ② 名牌數 < 投票數일 경우

- 議長이 名牌數 < 投票數 事實報告
- “一旦 開票하여 名牌數보다 많은 投票數가 投票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면 그 投票는 有效한 것으로 看做하겠습니다.”로 宣布한 후 開票
- 開票結果 名牌數보다 많은 投票數가 投票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면 이 事實을 報告하면서 投票結果를 宣布함.

그밖에 地方議會는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副議長이 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地自法 第49條 1項). 이때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地自法 第49條 2項). 불신임결의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地自法 第49條 3項)

#### ○ 委員會의 設置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를 둘 수 있고(地自法 第50條 1項) 委員會의 委員을 선임한다. (地自法 第50條 3項)

#### ○ 事務機構의 設置

地方議會는 條例로써 事務機構를 設置하고 事務職員을 둘 수 있다. (地自法 第82條～84條)

#### (4) 地方議會議員身分에 관한 權限

##### ① 資格審查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議員의 資格이란 의원이 지방자치법상의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말한다.

###### ○ 審查請求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재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地自法 第71條 1項)

###### ○ 被審議員의 辯明

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會議에 出席하여 辯明할 수 있다. 그러나 議決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地自法 第71條 2項)

###### ○ 議決定足數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은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地自法 第72條 1項)

###### ○ 資格의 喪失

피심의원은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地自法 第72條 2項)

##### ② 懲戒

지방의회는 의원이 地方自治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때에는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地自法 第78條)

###### ○ 懲戒의 要求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사유가 있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

관 委員會 또는 本會議에 回附한다. (地自法 第79條 1項)

한편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議員은 모욕을 가한 議員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地自法 第75條 2項) 懲戒를 要求하는 의원은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地自法 第79條 2項). 그리고 議長은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本會議에 回附한다. (地自法 第79條 3項)

○ 種類

징계의 종류로는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이 있다. (地自法 第80條 1項)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地自法 第80條 2項).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 議決定足數는 地方自治法 第56條 가 적용된다.

○ 懲戒에 대한 不服

징계를 일종의 行政行爲로 보아 行政訴訟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③ 議員의 辭職

地方議會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閉會中에는 議長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地自法 第69條)

## 第 4 節 地方議會의 會議

### 1. 議會의 會期

지방의회가 의사를 형성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會期라고 하는데, 이에는 定期會와 臨時會가 있으며, 會議總日數는 定期會

와 臨時會를 합하여, 市, 道에 있어서는 100일, 市, 郡 및 自治區에서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地自法 第41條 3項)

#### 가. 定期會의 集會日과 會期

地方議會의 定期會는 市·道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0일에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매년 11月 25일에 集會한다. 다만 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다음 날에 集會한다. ((地自法 第38條) 基礎議會의 定期會의 會期는 30일 이내로 한다. (地自法 第41條 2項)

#### 나. 臨時會의 集會日과 會期

총선거후 最初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召集한다. (地自法 第39條 1項).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地方議會 議長은 15日이내에 臨時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地自法 第39條 2項). 臨時會의 召集은 市道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市, 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5일 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地自法 第39條 3項)

臨時會의 會期는 10일 이내로 한다. (地自法 第41條 2項)

## 2. 議事 및 議決定足數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議事定足數란 地方議會가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수를 말하고, 議決定足數란 의결을 하는데 必要한 수를 말한다.

#### 가. 議事定足數

지방의회는 在籍議員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會議中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地自法 第55條 1項, 2項)

#### 나. 議決定足數

의결정족수에는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의 두 가지가 있다. 一般議決定足數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地自法 第56條 1項, 2項) 一般議決定足數는 地方自治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特別議決定足數는 그 수가 강화된 경우를 말한다. 特別議決定足數는 特別規定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사 안	관 계 조 문
재적의원 과반수 의 찬성	* 의장단의 불신임 결의(재적의원 1/4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	제49조 ②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결의의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회의의 비공개 결의(의원 3인 이상 발의)	제19조 ④ 제99조 ③ 제57조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에 관한 조례 * 의원의 자격상실 결의 (재적의원 1/4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의원의 제명 결의	제6조 ② 제72조 제80조
* 기타 임시회의 소집요구,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부결안건의 본회의 부의, 행정조사권의 발동 등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연서가 필요		

發議 決定足數

案 件	發 議 定 足 數	議 決 定 足 數
一般案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5以上</li> <li>10人以上 연서(法58條)</li> <li>* 自治團體의 長 提出</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法56條)</li> </ul>
議長, 副議長選舉		" (議會規則 8條)
議長 不信任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4以上(法49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過半數(法49條)</li> </ul>
條例案 再議要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治團體의 長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2/3以上 贊成(法19條)</li> </ul>
行政事務監查 決調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3以上(法36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過半數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 贊成(法56條)</li> </ul>
議員의 資格審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4以上(法71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資格喪失議決 在籍議員 2/3以上 贊成(法72條)</li> </ul>
議員의懲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5以上 議員 10人以上(會議規則 82條 3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除名의 경우 在籍議員 2/3以上 贊成(法80條)</li> </ul>
臨時會集會 要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3以上(法39條)</li> <li>* 自治團體의 長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가 있으면 集會</li> </ul>
會議의 非公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議員 3人以上(法57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出席議員 2/3以上 贊成(法57條)</li> </ul>
休會中 會議再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3以上(會議規則 15條)</li> <li>* 議長의 필요시, 自治團體의 長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가 있으면 會議再開</li> </ul>
會期中 委員會開會 要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3以上(法53條)</li> <li>* 委員長의 필요시</li> <li>* 閉會中에는 本會의 議決 自治團體의 長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가 있으면 開催</li> </ul>
委員會 廢棄案件의 本會議 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在籍議員 1/3以上(法61條)</li> <li>* 議長의 要求</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구가 있으면 本會議 부의</li> </ul>

### 3. 會議의 原則

#### ① 會議의 公開原則

地方會議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舉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議長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地自法 第57條)

비공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다면, 그 결과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地自法 第64條 4項)

#### ② 會期續開의 原則

지방의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地自法 第59條)

#### ③ 一事不再議의 原則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發議 또는 提出할 수 없다. (地自法 第60條)

### 4. 議案의 發議等

#### 가. 議案의 發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나 在籍議員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舉의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地自法 第58條) 豫算案은 일반 의안과 달리 地方自治團體의 長만이 제출한다(地自法 第118條 1項)

#### 나. 委員會에서 廢棄된 議案

委員會에서 本會議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議案은 本會議에서 附議할

수 없다(地自法 第61條 1項). 다만,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報告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地自法 第61條) 이러한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地自法 第61條 2項)

\* 議決의 取消, 撤回 : 지방의회의 議決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撤回, 取消 될 수 있다는 것이 舊法下에서 判例의 태도이다.

## 5. 議長 또는 議員의 除斥

地方議會의 議長이나 議員은 本人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案件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議會의 同意가 있을 때에는 議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地自法 第62條)

## 6. 會議錄

地方議會는 會議錄을 작성하고 議會의 進行內容 및 結果와 出席議員의 姓名을 기재하여야 한다(地自法 第64條 1項). 會議錄 작성은 住民의 열람자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會議錄에는 議長과 議會에서 選出한 議員 2人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地自法 第64條 2項)

議長은 會議錄의 사본을 첨부하여 會議의 結果를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地自法 第64條 3項). 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議長이 인정하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한 事項은 公開하지 아니한다(地自法 第64條 4項)

## 7. 會議規則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地方自治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事項은 會議規則으로 정한다(地自法 第63條). 會議規則은 기관내부적인 규정인 바, 즉 구성원만 구속하는 것이므로 條例가 아니다. 會議規則의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 8. 秩序維持

地方議會議員이 本會議 또는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會議規則에 違背되는 發言 또는 行爲를 하여 회의장의 秩序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소란하여 秩序를 維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 할 수 있다(地自法 第74條 1項, 3項)

한편 議長은 회의장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 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고, 방청인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案 件 別 審 査 節 次

안 건	심 사 결 과
중요조례안	제 안 설 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발의의원,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 의결
재 해 대 책	현황보고 → 현지확인 → 질의답변 → 대책심의 → 의결
청 원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견서작성 (소개의원) (전문의원) (※ 채택시) → 의결  ※ 청원처리 절차는 청원심사규칙에 규정
예 산 결 산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소위원회심사 → 계수조정 (관계공무원) (전문위원) → 의결  ※ 결산의 경우 검사위원의 설명청취가능
징계 · 자격심사	징계요구 : 징계요구서 및 청구서심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의 출석요구 · 심문 · 변명등 회의규칙에 의한 절차 자격심사 : 자격심사청구서 및 답변서심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의 출석요구 · 심문 · 발언등 회의규칙에 의한 절차
행 정 사 무	계획의결 → 계획서통지 → 자료요구 · 중인 및 참고인채택 · 현지확인 → 감사 · 조사실시 → 결과보고서채택
감사 · 조사	※ 계획서에는 대상 · 일정 · 기간 · 편성 · 요령 · 장소등 포함
기 타	제안또는 취지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의결 (발의 · 제출자) (전문위원)

※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는 생략가능

## 행정사무감사 · 조사처리흐름도

